##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1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위성락·박민규·황정아

윤건영 · 김영환 · 김 윤

김성환 · 채현일 · 백승아

양부남 • 문금주 • 신정훈

정성호 • 박지혜 • 정진욱

최민희 • 허 영 • 정준호

전진숙 • 박희승 • 이기헌

박홍배 · 김태선 · 황명선

이원택 의원(2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.

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「국회법」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 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 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7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231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7항 중 "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,"를 "「국회법」 제54조의2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예산회계) ① ~ ⑥ (생	제16조(예산회계) ① ~ ⑥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⑦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	⑦ 「국회법」 제54조의2에 따		
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,	라 국정원의 예산안과 결산 심		
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	사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		
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			
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